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8
------	------

2018. 6. 2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6.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용복)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144명에서 18,167명으로 23명 증원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행정서비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23명을 순증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4급 1명을 증원(△ 5급 1명) 하며, 납세자보호관 지정을 위해 정원 1명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소방공무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3)

- 서울시(이하 “시”)는 잇따른 각종 사고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이 지속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소방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¹⁾의 경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음.
- 현재 시 관내에는 안전 점검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물이 209,602개 존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재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 관내 소방시설물 안전 점검 대상 내역〉²⁾

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209,602	261	3,733	27,628	20,468	157,512

- 현행 소방안전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은 안전점검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특별히 조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소방인력의 한계 등에 따라 대상 시설물의 약 12%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임.

〈최근 3년간 소방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구 분	총 대상물 수	연중 점검결과	
		총 점검 수	점검비율
2017년	209,602	26,679	12.7%
2016년	196,100	26,848	12.8%
2015년	150,955	24,278	11.6%

- 현재 시에는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담당자와 24개 각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층수, 면적, 건축물 형태 등에 의해 등급을 분류함.

소방서에 배치된 예방인력을 포함해 모두 200명의 특별조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수시검사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 시는 화재예방과 대상물 점검 등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47명(본부4, 소방서43)의 소방특별조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3명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며, 이 경우 시 소방공무원의 전체 정원은 현재 6,979명에서 7,002명으로 확대됨³⁾(참고자료1).
-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와 소방점검 대상 시설물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당 인력의 증원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시의 계획과 같이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점검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시 관내 점검대상 소방시설물의 약 80% 정도는 여전히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소방시설물의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물주가 선정·의뢰해 민간업체가 실시하는 현행 자체점검 방식을 변경해 소방서 직접 점검 방식과 혼합하거나, 소방서가 점검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필요인력 47명 가운데 24명은 2019년 상반기 중 증원계획

- 한편, 시는 최근 5년간 현업부서 3교대 실시와 소방서 신설, 오토바이 구급대원 신설 등의 목적으로 모두 478명의 소방인력을 꾸준히 증원해 왔음.

〈소방인력 증원 내역〉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명)	173	146	45	86	28
사유	-3교대 157명 -쌍문안전센터 신설 16명	-구급요원93명 -소방예방인력 53명	-신규사업 및 현장인력 45명	-성동서신설 56명 -오토바이구급 대원 30명	-세곡안전센터 신설 28명

- 또,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2018~2022)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부족한 현장대응 부족인력 695명을 포함해 948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임⁴⁾.

〈서울시 소방인력 보강 계획〉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948명)		128	273	224	182	141
현장대응 부족인력(695명)		94	177	156	151	117
관서신설 인력(199명)		28	96	56	19	-
기타 (54명)	소방학교 교관보강(6명)	6	-	-	-	-
	안전보건 전담인력(48명)	-	-	12	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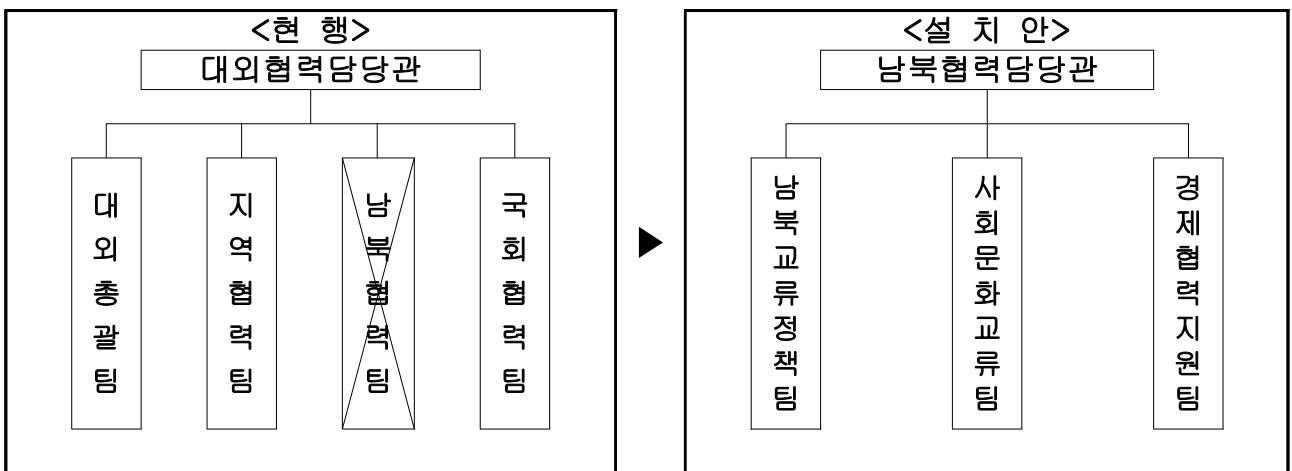
4) 서울시(2018.4)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

- 소방직 증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 정부와 시의 시민안전 확보노력과 같은 긍정적인 정책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의 조직과 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조직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것임.

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직급조정(안 별표3)

- 시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라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시는 남북교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내 대외협력담당관에 소속된 ‘남북협력팀’을 확대 개편해 ‘남북협력정책팀’을 포함한 3개팀 12명 규모의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임.

〈남북협력담당관(4급) 신설 계획(안)〉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 본청의 5급이하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이를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데 반영하고자 함.
- 부서의 신설이나 직급의 조정은 해당 업무나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시 전체 조직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임.
-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른 시의 역할 증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신설이나 직급 상향조정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예측에서 벗어나 해당 업무 영역의 확대가능성이나 지속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위직 정원을 줄여 고위직 정원을 확대하는 개정안과 같은 조치는 장기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임.

라.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에 따른 정원 이관(안 제2조)

- 지난 해 12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 함.
- 관련법령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12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송부하고, 올해 1월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통보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과 성공적 시행을 유도하고 있음.
- 시는 법적 구제절차 이전 납세자 권리의 사전적 보호 취지를 반영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효과적인 조정·중재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소관부서로 지정해 운영하고자 함.
- 시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재무국을 담당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 민원조사3팀장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세 업무 능력을 갖춘 납세자보호 전담인력(세무6급)을 증원·배치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 결국 현재 시의 계획에 따를 경우, 안 제2조와 같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팀장급(5급) 1명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겸직하도록 하고, 본청 5급이하 정원 1명(세무직)을 합의 제행정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할 예정임⁵⁾.
- 이와 같은 조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2).
- 최근 3년간 시에는 1,103건⁶⁾의 각종 지방세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5) 현재 민원조사3팀은 6명으로 운영중이며, 세무6급 1명을 증원해 7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6) 시 응답소 내 민원통계 자료 참조

처리되고 있을 정도로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상당한 업무량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정착에 따라 관련 민원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음.

〈최근 3년간 세무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계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	1,103	1,076	265	259	739	718	99	99
2017년	288	283	54	52	212	209	22	22
2016년	361	358	93	92	219	217	49	49
2015년	454	435	118	115	308	292	28	28

-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고, 납세자보호관 직급과 해당 부서의 정원 책정의 적절성, 개방형 직위 임용 타당성 등에 대해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

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

- 개정안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은 소방직 23명이 증원되고, 5급 정원

7) 현재 서울과 충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직급도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4·5급 복수직위로 정하고 있음.

1명이 4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약 8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산정내역〉

인건비 소요 산정내역	비고
- 계 : 1,628,948천원 - 일반직 직급 조정 : 3,831천원 4급(+1) : 107,947천원 5급(-1) : △104,116천원 - 소방직 증원(+23명) : 1,625,117천원 소방경(+1) : 101,728천원 소방위(+3) : 94,436천원 × 3 = 283,308천원 소방장(+4) : 83,410천원 × 4 = 333,640천원 소방교(+6) : 66,046천원 × 6 = 396,276천원 소방사(+9) : 56,685천원 × 9 = 510,165천원	정원조례 개정시기를 고려해 소요액의 1/2인 814,474천원 이 올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시 기준인건비로 1조 7,32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시는 당초 1조 6,882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 올해 1월 증원된 373명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약 291억원과 금번 개정에 따른 8억원을 고려할 경우 기준인건비 대비 약 150억원의 인건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방직 예방인력을 포함해 하반기에도 예상치 못한 인력 소요에 따라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인건비에 따른 적정한 인력 및 인건비 관리가 요구됨.

바. 장기적인 인력·정원관리 필요성

-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제23조8)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수립된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273명의 소방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 조직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불과 5개월 뒤인 올해 4월 수립한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18~2022)’은 5년간 948명의 소방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음.
-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및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임.
- 소방분야의 시급성이나 예측곤란과 같은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시가 짧은 시차를 두고 수립한 유사한 계획사이의 이와 같은 심각한 차이는 시가 수립하는 각종 주요 계획의 신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정원의 변동이나 인력계획은 행정수요나 주요 정책의 변화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히

8)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144명”을 “18,1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217명”을 “10,21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979명”을 “7,0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50명”을 “151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8,144”를 “18,167”로 한다.

같은 표 일반직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32	140	16	7	65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852”를 “9,851”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979”를 “7,002”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944”를 “6,96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8,144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217명</u></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u>6,979명</u></p> <p>3.~4. (생략)</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150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8,167명</u> ----- -----.</p> <p>1. ----- -----</p> <p><u>10,216명</u></p> <p>2. ----- ----- <u>7,002명</u></p> <p>3.~4. (현행과 같음)</p> <p>5. ----- <u>151명</u></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18,14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2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7</td> <td>7</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231</u></td> <td><u>139</u></td> <td>16</td> <td>7</td> <td>65</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u>18,144</u>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242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u>231</u>	<u>139</u>	16	7	65	4	4·5급	10	10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18,16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2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7</td> <td>7</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232</u></td> <td><u>140</u></td> <td>16</td> <td>7</td> <td>65</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u>18,167</u>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242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u>232</u>	<u>140</u>	16	7	65	4	4·5급	10	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u>18,144</u>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242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u>231</u>	<u>139</u>	16	7	65	4																																																																																																																																							
4·5급	10	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u>18,167</u>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242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u>232</u>	<u>140</u>	16	7	65	4																																																																																																																																							
4·5급	10	10																																																																																																																																											

현행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5급이하 소계	9,852							5급이하 소계	9,851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29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70							연구직 계	370						
연구관	59	5		32	22		연구관	59	5		32	22			
연구사	311							연구사	311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979							소방공무원 계	7,002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944							소방령 이하 계	6,967						
교육공무원 계	498							교육공무원 계	498						